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98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허성무 · 박선원 · 송재봉
김문수 · 양문석 · 이언주
채현일 · 문정복 · 이재관
손명수 · 최혁진 · 허종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당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외에도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4조제1호의2 신설 등).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34조제1호”를 “제34조제1호·제1호의2”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4조제2호부터”를 “제34조제1호의2 및 제2호부터”로 한다.

제3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어업권자가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경영한 경우
제40조제5항 중 “제34조제1호”를 “제34조제1호·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4조제1호”를 “제34조제1호·제1호의2”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34조제1호”를 “제34조제1호·제1호의2”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34조제1호”를 “제34조제1호·제1호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생략)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4조제1호·제1호의2----- ----- ----- ----- ----- ----- ----- ----- ----- -----.
제26조(어업권의 경매) 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	제26조(어업권의 경매) ① ----- -----제34조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 ----- ----- ----- ----- ----- ----- ----- -----

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
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
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 6. (생 략)

제40조(허가어업) ① ~ ④ (생
략)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3
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어업권자가 면허받은 수
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경영한
경우

2. ~ 6. (현행과 같음)

제40조(허가어업)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제34조제1호·
제1호의2-----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

-----.

⑥ 제34조제1호·제1호의2-----

-----.

제50조(준용규정) ① -----

-----제
34조제1호·제1호의2-----

용한다.

② · ③ (생 략)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 · 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생 략)

나.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6호

2. ~ 5. (생 략)

②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 · 정지 또는 취소) ①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
34조제1호 · 제1호의2-----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